##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4

발의연월일: 2020. 6. 25.

발 의 자:윤재갑·조경태·위성곤

문진석 • 이동주 • 장경태

주철현 · 김민철 · 이원택

이재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석유류에만 적용하는 일몰규정으로,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여객선박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 2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 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 에 따른 석 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 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 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 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022년 12월 31일-----것에만 적용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② (현행과 같음) ② ~ ② (생 략)